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수산종자원의 설치 근거 마련〉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8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수산종자원의 설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육종·증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둬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립수산물종자원의 설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물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종자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국립수산물종자원) ① 수산물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종자원을 둔다. ② 국립수산물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수산물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수산물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6. 수산물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7. 수산물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u>8. 수산종자의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u> <u>9. 국내 수산종자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u> <u>10. 수산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u> <u>11. 품종 관련 국제적인 동향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u> <u>③ 국립수산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수산종자¹⁾는 수산동물의 정액·수정란·알·치어·치패, 수산식물의 씨앗·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및 그 밖의 어린 개체²⁾로 2023년 기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는 3,119건, 생산량은 4만 5,001톤이며, 주요 생산품종은 넙치, 감성돔, 굴, 새고막, 흰다리새우, 김, 미역 등임.

수산종자산업은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 수산물 소비량 증대 등에 대응하여 종자 생산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며,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및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서류(개구리 등)·파충류, 두족류(오징어 등)·성게류·해삼류·갑각류(새우 등)·개불류·갯지렁이류, 미색류(미더덕, 우렁쉥이 등), 해조류의 포자체·배우체

이에 개정안은 수산종자의 생산·보급·산업화 등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다만, 법령 체계면에서 다른 기관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두는 소속(부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경우에도 설치 근거가 개별 법률이 아닌 각 기관별 소속기관 직제에 마련되어 있고, 아울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³⁾,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생략)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하 조문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사연구형 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국립종자원
	연구형 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설치 근거 현황]

명칭	소속	개별법 근거	소속기관 직제 근거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국립종자원	농림부	종자산업법 (×)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4)(○)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	해수부	수산종자산업법 (×)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5)(○)	제2조(○)
국립축산과학원	농진청	축산법 (×)	농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자원법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정부조직법」 제4조 등 관련 규정]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시행령)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 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 해양수산부도 수산종자의 생산·보급·산업화 등 분야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직제)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